

2015년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

□ 감사개요

- 시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
- 감사기간: 2015. 5. 12. ~ 5. 13.(2일간)
- 감사범위: 2010~2014년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 부채관리실태 전반
- 조사중점사항 :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로 경영효율화를 도모

□ 지적사항

| 계 | 시정 | 통보 |
|---|----|----|
| 7 | 3 | 4 |

○ 시정(3건)

- ① 「지방공기업법」 등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감채 적립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업무상황 공시 항목 공개
- ③ 재무제표상 탐라영재관 운영사업의 예금과 예수금잔액이 불일치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.

○ 통보(4건)

- ① 「인사규정」 제45조의3(징계사유의 시효)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등의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이행계획'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「이사회운영규정」에 이사회 의사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매출상품 매매계약 내용에 담보조건을 추가하는 방안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, 결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 운영 중인 예산회계 관련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